



(:)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9호, 2020. 5. 27, 일부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1 ()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

1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 7. 22.]

2 ()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3 ()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전문개정 2009. 4. 7.]

3 2()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 4. 7.]

3 3(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3 4(가)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4.]

3 5()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3 6()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3 7(.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4.]

4 (.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2. 12.]

4 2()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 4. 7.]

4 3 삭제 <2009. 4. 7.>

5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2013. 1. 31., 2014. 2. 12., 2019. 12. 24.>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2. 11. 1.]

5 2() 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6 ()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7 ()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8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1.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재생원료·성형제품·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본조신설 2013. 1. 31.]

9 ()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6. 12. 30.>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본조신설 2013. 1. 31.]

10 () ①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1.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4. 7.]

10 2()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2. 12.>]

10 3()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12.>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2. 12.>]

11 ()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

12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색상·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유통지원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1.]

12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1. 21.>

[전문개정 2009. 4. 7.]

[제19조에서 이동 <2009. 4. 7.>]

12 3()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1.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
2. 임차료 등 빈용기 보관에 드는 비용
3. 빈용기 운반에 드는 차량·유류비

②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유통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 1. 21.]

12 4()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지원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1.]

[중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6. 1. 21.>]

12 5()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 2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 1. 21.>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가 미회수되어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전문개정 2009. 4. 7.]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 1. 21.>]

12 6()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13 ()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중전 제13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0. 5. 27.>]

13 2() 법 제1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1. 22.,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27.>]

14 (.)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0. 5. 2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전문개정 2009. 4. 7.]

15 ()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1.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한다)
3.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16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17 ()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내역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

18 ()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 18 2()**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22.>
-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20. 5. 27.>
- [본조신설 2012. 11. 1.]

18 3
[제12조로 이동 <2009. 4. 7.>]

- 19 ()**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
 -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
 -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 [본조신설 2014. 7. 22.]

20 ()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 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20 2()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4. 황분 함유량

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20 3()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20. 5. 27.>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20 4()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20 5()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행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5. 27.>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행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행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행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행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행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20. 5. 27.]

20 6()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행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행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행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행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④ 고행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행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20 7(가· 가)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행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행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행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행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28.>
-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 나. 화력발전시설
 - 다. 열병합발전시설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행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8.>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행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행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행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행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
1. 고행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행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1. 28.>
- ⑦ 고행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행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
-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18. 11. 28.]

20 8()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20 9()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최초검사: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18. 11. 28., 2020. 5. 2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20 10()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m³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m³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20 11()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14. 7. 22.]

20 12()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8.>

[본조신설 2014. 7. 22.]

20 13()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20 14()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2.]

21 (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3. 11.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④ 삭제<2013. 11. 22.>

⑤ 삭제<2013. 11. 22.>

[전문개정 2009. 4. 7.]

21 2() 법 제28조의2제4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21.]

22 (가)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2.]

23 (가)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2.]

23 2()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1. 21.]

24 ()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 2016. 1. 2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 4. 7.]

25 ()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7.]

25 2()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7.]

- 26 ()**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2014. 2. 12., 2014. 7. 22., 2016. 1. 21., 2019. 12. 24.>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의3.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

- 27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9. 12. 24.>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4.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7.]

27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1., 2013. 11. 22., 2017. 12. 29., 2020. 5. 27.>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
 - 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 삭제<2012. 11. 1.>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삭제<2016. 1. 21.>
 6. 삭제<2016. 1. 21.>
 7. 삭제<2016. 1. 21.>
 8. 삭제<2016. 1. 21.>
 9. 삭제<2016. 1. 21.>
- [전문개정 2009. 4. 7.]

27 3() 법 제36조의2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1의2.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1.]

28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20. 5. 27.>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6의2. 제12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 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14. 4. 30.]

<제869호, 2020. 5. 27.>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품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